

## 소규모합병 관련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

주식회사 아세아텍은 주식회사 호산나와의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을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정관 17조에 의거 하여 2023년 05월 02일을 기준으로 정하며,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규모합병 반대의 권리가 있음을 이에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- ▶ 기준일 : 2023년 05월 02일
- ▶ 주식명의개서 정지 기간 : -

2023년 04월 14일

주식회사 아세아텍  
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비슬로96길 11  
대표이사 김 신 길  
[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](#)